

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효력발생일: 2024 년 03 월 22 일

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연간갱신(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)
 - 2) 소득세법 개정사항 (2024.01.01) 반영

항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요구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	-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- 소득세법 개정사항 (2024.01.01) 반영 <업데이트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기준일: 2023.02.06	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나. 환헤지 관련사항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기준일: 2023.02.06	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결산일 기준 3년 표준편차 : <u>2 등급 20.19%</u>	- 결산일 기준 3년 표준편차 : 2 등급 16.83% <업데이트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기준일: 2023.02.06	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
항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요구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아니오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 연금소득이 1,2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 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*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: 1,5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 연금소득이 1,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 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*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 나. 재무상태표 다. 손익계산서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	- 제 19 기 (2023.02.07~2024.02.06) <추가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기준일: 2023.02.06	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별수익률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 기준일: 2023.02.06	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아니오	정보 업데이트	-2021.12.31 -기준일: 2023.02.06	- 2022.12.31 <업데이트> - 기준일: 2024.02.06 <업데이트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아니오	사명 변경	- 신한아이타스(주)	- 신한펀드파트너스(주)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
1) 연간갱신(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)

항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요구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간이투자설명서 전반		정보 업데이트	-	결산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